

중복·과다 보험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정

백영화 선임연구위원

요 약

고객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「중복·과다 보험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」을 제정하였음.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명보험 및 장기보험과 관련하여 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 특별인수심사를 도입하여 재정심사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,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적하도록 함

○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「중복·과다 보험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」을 제정하였음

-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신용정보원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는 TF를 구성하고 무리한 중복·과다 보험가입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음¹⁾
 - 고객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
-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2023년 9월 1일에 「중복·과다 보험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」(이하 '가이드라인')을 제정하였음²⁾
 -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별 특성에 기반하여 합리적 보험가입을 유도하고, 보험사기 목적의 중복·과다 보험가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 - 가이드라인은 생명보험에서는 종신·정기보험의 사망담보에 대한 재정심사·인수기준, 손해보험에서는 장기보험 중 상해사망담보에 대한 재정심사·인수기준, 일반보험 중 여행자보험의 상해사망·후유장해 담보에 대하여 적용함

○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명보험 및 장기보험에 대하여 특별인수심사를 도입함³⁾

- 현재 보험회사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사망담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타사 가입 금액, 재산 등 재정심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, 회사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또한 자사 한도 이내인 경우에는 타사 가입 금액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인수를 하고 있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보험사기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
- 이에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서는 특별인수심사를 하도록 규정함
 -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, ② 기존 사망담보에 더하여 중복으로 사망, 상해·재해사망을 보장대상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, ③ 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한 사망담보 합산 가입 금액이 30억 원 이상, 계약 건수 4건 이상인 경우라는 조건에 전부 해당하는 청약 건에 대하여 특별인수심사 대상으로 함

1)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23. 7. 10), “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”

2)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협회의 자율 가이드라인으로, 보험회사는 각 사의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임

3) 해당 내용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함

- 이러한 특별인수심사 대상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소득상실 추정액(연령대·소득)의 대체 배수 등을 고려하여 인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
 - 인수기준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담보액 감액 인수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준도 포함시키도록 함
 - 인수기준은 추정소득과 함께 실제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며, 소득배수를 적용한 이후에는 총 납입보험료가 연 소득 대비 보험회사가 정하는 수준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

〈표 1〉 피보험자 연령대별 소득상실액 대비 인수기준(예시)

연령	40세 ↓	50세 ↓	60세 ↓	60세 ↑
소득 대비 가입금액	30배	25배	15배	10배
무소득자(생계가족, 피부양가족, 주부, 학생 등)	주 소득원 연간소득의 50% 인정			
인수기준 초과 시	감액 인수, 인수 연기, 보완 인수, 인수 거절 등			

- 실제 소득 확인과 관련해서는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환산된 연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
 - 증빙 서류와 관련해서는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마이데이터 정보, CB사를 통한 추정소득 및 신용등급 조회, ②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 명세서, 사업자 등록 및 재무제표 등 소득증빙 서류 징구, ③ 부동산등기부등본, 주식등기부등본,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자산증빙 서류 징구 등의 방법을 활용함
 - 가이드라인은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음
 - 인수기준을 초과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남기고, 해당 건은 보상담당부서와 보험사기조사 부서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함
 - 보험계약 체결 후 신용등급 및 직업 변경, 증액 등 보험사기 위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
- 가이드라인에서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하여 정보 집중 시스템을 도입함⁴⁾
-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시스템(ICIS)에 해외여행자보험 정보가 집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
 -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적하고자 하는 것임
 - 보험회사는 해외여행자보험 관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담보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인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
 - 다만 담보 합산은 개인 가입(단체·이벤트성 제외) 상품 중 단기(3개월 이내) 상품에 한정하며, 다른 보험 종목과는 중첩하여 계산하지 않음
 - 보험회사는 계약체결일 익일에 신용정보원에 가입정보를 집중(등록)할 때, 특별인수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재심사하여야 함

4) 해당 내용은 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함